



올초 개정된 세법

2009년이 시작되고 벌써 2월입니다. 연초 세우신 계획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이번 호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초에 개정된 세법 중 일반적으로 관심 있으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개정 주요 사항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낮은 세율 적용 과표구간의 대폭 확대를 위해 세율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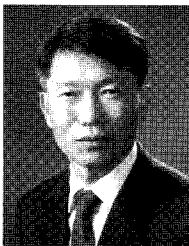
양계업종에서도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있으므로 세율인하로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종전에는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였으나, 과표 2억원 이하(2008년 귀속) 11%, 2억원 초과(2008년 귀속) 25%로 개정되었습니다.

2. 소득세 개정 주요 사항

1) 출산·입양시 200만원 소득공제 신설

2008년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신고한 경우 출생, 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즉 양계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2)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최고 20% 상향 조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돼 근로자, 자영업자 등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3) 근로장려세제제도 본격 시행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로, 첫 번째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20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①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해야 하고, 당해 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며 무주택이고, 부동산과 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연간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기준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10%/ 800~1,200만원 : 80만원/ 1,200~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16%

3. 양도소득세 주요 사항

농장을 하다가 매각한다거나 주택 등의 매도가 많은데 2009년부터는 이전보다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변동이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양도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전에는 9%~36% 누진세율을 적용했으나, 2009년부터는 6%~35%로 세율이 인하되었고, 과표 구간도 개정되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해 2009년에 양도한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3)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

종전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이 있어 50%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무거워 주택의 양도를 기피했는데 이를 감안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2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50%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번 법 개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종전에는 8년 이상 자경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최고 1억원까지 감면해 주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최고 2억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억원 감면 한도 적용 대상이 2008년 양도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납세자도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확인하여 종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